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5. 1.



환 경 부
교통환경과

❏ 목 차 ❏

1. 개 요	1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2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5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0

1. 개요

가. 목 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에 필요한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나. 근 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25년 운행차 저감사업 지원금액(국비) 및 물량

- ☐ 사 업 비 : 263,335백만원 (조기폐차 216,070백만원)
-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조기폐차 : 국비 50%(평택시 70%), 지방비 50%

< '25년도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 >

(단위: 백만원, 대)

구분	총계		조기폐차		운행차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운행제한 카메라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계	263,335	163,720	216,070	156,484	6,011	3,083	41,253	4,153	500	20
서울	17,289	9,227	14,503	9,021	151	56	2,635	150	250	10
인천	13,012	6,303	10,891	6,135	152	46	1,968	122	-	-
경기	50,915	29,276	45,385	28,520	681	278	4,849	478	-	-
부산	14,957	11,676	13,372	11,221	592	334	993	121	-	-
대구	5,672	3,860	4,636	3,606	264	160	773	94	-	-
광주	8,770	5,106	7,859	4,979	149	69	761	58	-	-
대전	5,373	3,363	5,090	3,283	102	62	181	18	-	-
울산	5,832	3,412	4,716	3,187	276	167	841	58	-	-
세종	1,726	1,037	1,284	984	33	20	409	33	-	-
강원	12,721	8,496	10,107	8,133	296	137	2,318	226	225	9
충북	12,184	6,527	9,308	6,221	145	77	2,731	229	25	1
충남	19,901	12,622	15,778	12,066	285	109	3,838	447	-	-
전북	15,551	8,899	11,328	8,353	261	123	3,962	423	-	-
전남	19,675	12,322	14,467	11,461	518	314	4,690	547	-	-
경북	28,190	18,997	21,443	17,821	851	484	5,896	692	-	-
경남	28,320	20,174	23,127	19,104	1,223	631	3,969	439	-	-
제주	3,247	2,423	2,776	2,389	32	16	439	18	-	-

※ (조기폐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 '09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상차량확인 비용 등
(운행차 저공해조치) DPf 및 PMH-NOx 저감장치 부착, 전동화 개조(1톤 화물차)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DPf,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지게차 등),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함)

나. 보조금 교부조건

- ☐ (교부 조건) 환경부장관은 지역에서 운행되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실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교부결정을 할 수 있음
- ☐ (지방비 보조) 지자체의 장은 조기폐차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국비 50% (단, 평택시는 70%), 지방비 50%
-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참고 3), 동 지침 및 보조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 집행기준 준수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지원에 한함
-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의 장은 교부받은 “운행차 저감사업” 보조금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보조금 산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을 확인하여 지원
-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의 장은 '25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 경유차 현황,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 (절차 준수 및 시스템 의무 사용)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업무 대행기관 포함)는 반드시 동 지침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신청접수 및 집행실적 관리 등)하여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이트 주소)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지자체는 '25년 보조사업 계획 수립 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예산, 물량), 추정 및 재배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함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의 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스템으로 신청(제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함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광역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작성시 시·군별 예산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여야 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교부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의 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의 장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자체의 장은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결정 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의 장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미세먼지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포함)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은 적용하지 아니함

마. 보조금 집행 대상

- **(대 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우선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조기폐차 가-2. 절차(14p)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기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최우선 지원)

※ “가~나” 이외에 모두 동 순위이며,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별도 적용 가능

나.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라.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라” 이외에 우선순위 별도 추가 가능

- ② 1인이 다수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대수를 제한하거나 1인당 1대에 대하여 우선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예시) 기간을 정하여 접수 받아 1인 1대로 우선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등

□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구분		5등급	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구분		지원기준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 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단, 조기폐차 신청(4. 가-1 ①) 또는 선평차 신청(4. 가-2 ①)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년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조기폐차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중고차)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500cc 이하	72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100%	200%(신차)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100%(중고차)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랑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 7)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100%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함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 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대상자 선정 전 절차(선회차)는 선회차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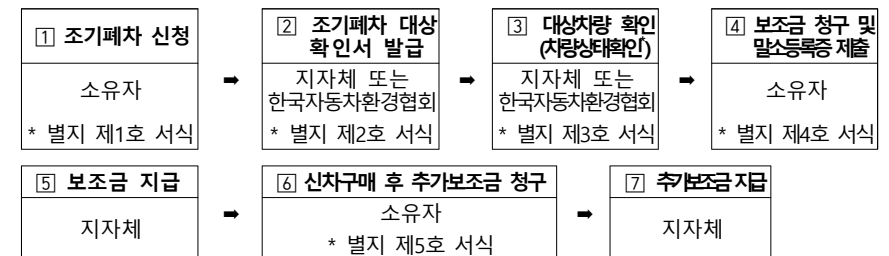
※ 단,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mecar) 차대번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 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보조금 지급 절차

가.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 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 지방자치단체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일정기간 접수를 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민원 해소

②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 가능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

-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③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

※ 지자체는 사업 공고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현장)으로 확인 가능

※ 다만, 대상차량확인시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함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잔여 예산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진행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먼저 진행

④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한다.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팩스·사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단,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 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확인 등을 확인하여 연장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 받아 연장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자체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말소 후 보조금 청구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⑤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⑥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를 하거나(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한다.

○ 단, 예산소진,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추가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확인 등을 확인하여 연장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 받아 연장 가능

- '24.11.1 이후 등록한 자동차 또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와 신차(중고포함) 구매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추가 보조금 청구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추가 보조금 청구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⑦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고 지자체는 시스템을 통해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이트 주소)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 기준)로부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발급기관(예시)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가-2 대상자 선정 전 폐차(이후 '선폐차') 시 절차(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① (선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호 서식)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대상자 선정 전 폐차(선폐차)를 반드시 표기)

- 신청서(별지호) 제출 후 폐차말소시 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 **가-1. 절차에 따라 기 접수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대상자로 미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선폐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 가능(별지 제1호서식에 선 폐차 신청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미해당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함)

② (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보조금 미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제출 시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 (선폐차) 접수 확인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

- 신청 접수 시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 및 말소등록증 제출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 불가 및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기 대상자 선정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기준에 따르게 됨을 안내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③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상태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

- ※ 지자체는 사업 공고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현장)으로 확인 가능
 - ※ 다만, 대상차량확인시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함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④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 등 제출)** 차량 소유자는 대상차량확인서 발급일부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지자체에 말소등록증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팩스·사진 등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 지자체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보조금 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선평차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증 접수 이후 차기 대상자 선정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차주에게 발급
- 이 경우,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 1분기 기준으로 적용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상한액, 지원율 등)은 차기 대상자 선정 당시 기준으로 적용
 - *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 가능
- ⑥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한다.
 - ※ 가급적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5호 서식)를 같이 제출 받아 지급 처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말소 후 보조금 청구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⑦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⑧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를 하거나(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한다.
 - 단, 예산 소진,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추가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확인 등을 확인하여 연장
 -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 받아 연장 가능
 - '24.11.1 이후 등록된 자동차 또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와 신차(중고포함) 구매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추가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추가 보조금 청구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9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고 지자체는 시스템*을 통해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이트 주소)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 기준)로부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발급기관(예시)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관해 차량 수리 공업사

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지자체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¹⁾(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²⁾ 등으로 확인

1)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
확인 기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60~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비고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문의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지자체는 공동명의자일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전산시스템(MECAR)에 모든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명(법인명) (공동명의로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의로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 - ____-*****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 연식()년 □ 배기량()CC					
	⑧□ 자동차 □ 건설기계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중량(화물)		□적재중량()톤 □총중량()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운행 상태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전 조기폐차 우 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로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로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층,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로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등록원부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층,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로자만 해당)	2.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검사결과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명서류 1부.(도로용 3층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명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규격(건설기계) □ ()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확 인 결 과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저소독중□ 소상공인□	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중고차		원 (₩)		
무공해차 구입보조금		원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만 해당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 현장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확인 항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인 결과	☐ 일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같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원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반박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제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년 □배기량()CC □용도: ()		
		□차명: □정원(승합): 명		
		□적재중량()톤 □총중량()톤 □규격(건설기계) ()		
	최초등록일자(차량)	년 월 일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폐차 관련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같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평차) 접수 확인증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번호		차대번호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일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확인결과	대상 여부	□ 가 □ 부	접수 불가 사유	
상기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일자 :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선평차 절차 및 안내(유의)사항 >				
○ 절차도				
① 선평차 신청 소유자 * 별지 제1호 서식	→	② 선평차 접수 확인증 발급 (보조금 미산정) 소유자 * 별지 제6호 서식	→	③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3호 서식
④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	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2호 서식	→	⑥ 보조금 청구 소유자 * 별지 제4호 서식
⑦ 보조금 지급 지자체	→	⑧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소유자 * 별지 제5호 서식	→	⑨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접수통보 이후 절차 >				
※ 접수 확인증을 교부받은 소유자는 즉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요청하여 2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급 받아야 함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증을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차기 대상자 선정 안내 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산정금액 안내 예정				
○ 안내(유의)사항				
※ 상기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보조금액) 보조금 산정금액(상한액, 지원율)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산정 (단,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적용)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처 : 00시 000과 ☎ 000-0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 금총 액	교부 액	집행액 누계			집행 잔액	비고		
							계	1월	2월				
합 계										실적	계획	실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 계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 소형	RV, 승합										
	화물												
	p-DPF	소 계											
		중 형											
		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PM·NOx 저감장치													
차량 및 건설기계 폐차	소 계												
	5등급	소 계											
		RV, 소형 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4등급	소 계											
		RV, 소형 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	소계											
		지게차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착기		5톤											
	14톤												

3. 특이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 참고 1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관련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B(개인)” 가족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전 된 경우는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단,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간 위·수탁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원 가능(단, “A(법인)”가 지원 받을 경우”B(개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실질적인 소유자 “A”에게 지원 가능(단,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해지 및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실질적인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C(개인)
⇒ (검토 의견) 실질적인 소유자 “C(개인)”에게 지원가능(단, “A(법인)”,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중고차 신규 등록(과거에 “A”명의로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
⇒ (검토 의견) 최종 소유권 이전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A,B,C” 공동명의 조기폐차 -> “B,D” 공동명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A,B”로 이전하여 추가 보조금 청구
⇒ (검토 의견)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필요 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아 진행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